

울산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가단1195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 14

주 문

1. 피고와 이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7. 11. 23. 접수 제196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